등록번호	입법정책담당관-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 개

				의 장
담당자	입법지원 팀장	입법정책 담당관	사무처장	

입법동향 – 2025년 제7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 7
2.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로 사용 지원 조례」 ····· 15
3.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 18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3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27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 35
2.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 ····· 42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53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의원발의로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59
2. 산불발생자에게 농업보조금 지급제한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62

Ⅵ. 법령 해석 사례

1. 법 개정 전(前)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 허가 적용 법률 ····· 69
2. 공동명의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75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5. 6. 5.,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600호, 2025. 6. 5., 제정】

□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직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제1～제3조).
나.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4조～제5조).
다.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함(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6곳): 강원, 제주, 인천, 경기, 경남, 광주

□ 도의회 입법 시사점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같은 법 제102조제1항은 시·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설치 및 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우리 도의회는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임기제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종들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근무**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의회 의원의 활동**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직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 시·도 현황】
의원+공무원 지원: 강원, 제주, 인천 ※ 인천: 의원과 공무원 지원 조례 각각 별도 시행
의원 지원: 경기, 경남, 광주

경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경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은 의회 소속으로 재직기간에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및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수사비용 등 관련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경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본회의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 등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경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야 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회사무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환수액 감면 사항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경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환수 및 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사항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2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경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해산된다.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 5.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6.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의 고지, 의견진술 및 수당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2 【제정】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 【시행 2025.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577호, 2025. 7. 1.,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광주광역시 관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제5조).

□ 타 시·도 제정 현황(5곳): 광주, 부산, 강원, 경북, 서울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영유아가 다니는 **시설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짐**.
※ **유치원 - 교육청** 소관 / **어린이집 – 지자체** 소관

○ 교육청 관리대상인 유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 2024년 기준 우리 도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902개소 원아 수는 28,902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안전한 먹거리 섭취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

【시행 2025.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577호, 2025.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말한다.
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의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즉시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 및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실시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시행 2025.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587호, 2025. 7. 1., 제정】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유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을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지원사업 대해 규정함(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광주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됨.

○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최근 산불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재난 현황】(2023 재난연감)
2023년 **9,799건의** 사회재난으로 **사망: 243명 부상: 9,359명 실종 3명, 재산피해: 367억원**

○ 사회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정서적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일상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피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시행 2025.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587호, 2025.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재난 발생 즉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
2. 피해자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
3.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학교(기관) 구성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
4.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학교(기관)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
5. 소속 학교(기관)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사회재난 관련 심리·정서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가족 등 피해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학교 및 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회재난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심리·정서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의료유사업자에의 자격증 재발급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 시·도지사로,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칙에서 →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생략)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간호조무사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자격증 재발급: 2,000원 나. 등록증명: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삭 제>
③ (생략)	③ (생략)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상위법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 신청** 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는것임.

*의료유사업자: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 우리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 3.,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98호, 2024.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분)

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의2 <삭제 1991. 2. 21>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증명 등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1991. 2. 21>

④ 삭제<2021. 8. 13.>

⑤ 삭제<2021. 8. 13.>

제4조(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0. 1. 7, 2000. 11. 3, 2002. 8. 16, 2003. 5. 16, 2003. 8. 8, 2006. 12. 29, 2010. 12. 31, 2013. 3. 15, 2016. 3. 25, 2017. 5. 19, 2018. 8. 10, 2021. 8. 13., 2024. 5. 3.>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준	요액
1. 증명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용역·물품의 제조 및 납품실적증명	1통	5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500
4) 공사준공사실(실적)증명	1통	500
나.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
2.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일반행정 관계	1통	5,000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통	500
나. 농수산 관계		
1) 어업허가 지위승계	1건	4,500
다. 경제행정관계		
1)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
2)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가)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의 변경 등록	1건	20,000
나) 승강기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의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
라. 공유재산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 연장) 신청	1건	3,0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2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1호, 2025. 3. 18., 일부개정】

□ 제정이유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 (생략) ②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조례:「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뜻함. ※ **도내 12개 생태관광지 운영**(전주, 부안 제외)

○ 최근 우리 도는 **포럼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등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용한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극복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고 있음.

* 생태관광+플러스 기본계획('25~'34년)

○ 다만, **시행 중인 조례**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않은 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란 도내 시·군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시·군에서 실행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시·군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이 생태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의 조성재원에 있어서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 시·군비가 일정비율로 협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12호(통권 제275호), 강명원】

◇ 민간 드론 기업 DJI가 2025년 농업박람회(Agrishow)에서 공개한 '제4차 농업용 드론 산업 인사이트 보고서(Agricultural Drone Industry Insight Repor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약 100여 개국에서 농약 살포를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기 약 40만 대를 운용 중**이다. 농업에서 무인항공기는 주로 파종, 친환경 비료 살포, 병해충 감시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농민이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농작업 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농약 살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작물 방제 등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약이 비산(飛散)되어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접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프랑스는 2025년**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2025. 4. 23., 법률 제2025-365호)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법률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가능 농지를 명시하고, 주거지 인접 농지에 농약 살포 시 주민 보호 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관련 법령	「농약관리법」, 「항공안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주제어	무인항공기, 농업용 드론, 농약 살포, 농약 비산, 무인 항공용 농약

□ 도입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방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농촌에서 무인항공기 사용의 92% 이상이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였으며, 이외 **파종, 비료 살포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는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항공방제 신고 및 사용 가능 농약 기준 등은 **「농약관리법」**, 무인항공기 안전성 인증 등은 **「항공안전법」**,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살포 장치 검정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무인 항공용 등록 농약 및 농약 살포 횟수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 한편,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즉, 바람의 세기, 방향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무인항공기가 추락**하거나 **농약이 비산**되어 **인접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비산된 **농약이 인접 주택가로 날아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프랑스는** 농약 살포 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해 2025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무인항공 방제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법률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가파른 농지(경사도가 20% 이상), 고온 다습한 바나나 농지, 모종용 포도나무 농지(대부분 경사도가 20% 이상)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 또는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한 농지에 농약 살포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의 「무인항공 방제법」

1. 입법배경

❍**(농업 종사자 건강 보호) 경사진 농지**에서 수작업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농업 종사자가 농약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활용할 경우** 노출량이 기존 방식에 비해 **약 2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이는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정밀 살포는 불필요한 농약 사용량의 절감**과 **환경오염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에 기여**한다. 특히 **유기농업 또는 '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에서의 활용은** 불필요한 농약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한다.

❍**(경사지 농지 등의 작업 안전 및 효율성 문제 해결)** 전통적인 **지상 살포 방식은** 경사진 농지 등에서 작업하는 **농민에게 물리적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농지는 **기계 접근이 곤란**하고, 혹 기계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토양 압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살포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국제 흐름에 부응한 기술 기반 농업으로의 전환)** 유럽 국가들이 이미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업 기술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간 세계 농산물 수출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2. 주요내용

❍ **프랑스 의회는** 2025년 4월 23일 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치료 개선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무인 항공 방제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률은 단일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평상시 제1bis항 B호	• **살포가 가능한 경우**: 지상살포 방식에 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살포가 인간 건강, 환경에 명백한 이점이 있는 경우 • **살포가 가능한 농약**: 생물학적 농약 제품, 유기농업에서 허가된 농약 및 저위험 농약 • **살포가 가능한 농지**: 경사도가 20% 이상인 농지, 바나나 농지[9] 또는 포도나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모종(Porte-greffes)용 포도나무 농지[10] • **허가**: 환경부, 농업부, 보건부를 담당하는 장관들은 프랑스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11]의 의견 및 관련 직능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명령으로 농약 살포 허가조건을 명시함
보건 비상 사태 제1bis항 A호	• **살포가 가능한 경우**: 다른 수단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보건상 위험이 있는 경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살포 가능 • **살포가 가능한 농약**: 보건상 필요한 모든 농약 • **살포가 가능한 농지**: 보건상 필요한 모든 농지 • **허가**: 환경부, 농업부, 보건부를 담당하는 장관들은 공동 명령을 통해 임시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보건상 필요한 모든 농지에 농약 살포를 허가할 수 있음
시험 평가 농지 제1ter항	• **시험 평가 대상 농지**: 무인항공기를 통한 공중 살포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뚜렷한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농지 • **살포가 가능한 농약**: 생물학적 농약 제품, 유기농업에서 허가된 농약 및 저위험 농약 • **기간**: 최대 3년
주민 보호 조치 제3항	• **주민 보호조치 마련**: 거주지 및 주민 여가 활용 공간 인접 농지에 농약 살포 시 • **주민 보호조치 마련 불이행 시**: 도지사는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1)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 무인항공기 활용

- 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의 공중 살**포는 지상살포에 비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뚜렷한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약 살포 시** '생물학적 방제용 농약, 유기농업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 2009년 10월 2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1107/2009호) 제47조의 의미 내의 **저위험 농약(이하, 저위험 농약 등)'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사도 20% 이상인 농지, 바나나 농지, 포도나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모종(Porte-greffes)용 포도나무 농지(이하, 살포 가능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 위의 경우 **환경부, 농업부, 보건부 장관은**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의 자문을 받은 후, **농업인 및 농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직능 단체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2009년 10월 21일 제정한 지속 가능한 농약 사용을 위한 **공동체 행동 체계 마련에 관한 지침(2009/128/EC') 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동 명령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허용 조건을 규정**한다.

- 다른 수단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보건상의 위해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농업부, 보건부 장관의 공동 명령에 따라 **모든 농약을 보건상 필요한 모든 농지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살포**할 수 있다.

❍ 시험평가

-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살포**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뚜렷한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 평가 대상 농지의 경우 **최대 3년간 저위험 농약 등을 뿌릴 수 있다.** 시험 결과는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이 평가하며, 평가 보고서는 의회 과학기술선택 평가국(OPECST)에 제출된다.

- **시험 평가의 허가조건과 시행방식 그리고 평가 결과**를 의회 과학기술 선택평가국(OPECST)에 전달하는 방식은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이 정한다**.

- 평가 결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살포하는 방식이 지상살포 방식에 비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뚜렷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 농업부 및 보건부 장관은 공동 명령을 통해 시험 평가 대상 농지를 살포 가능 농지로 등록**할 수 있다.

2) 주민 보호조치

❍ **「무인 항공 방제법」은** 살포 방식 여부(무인항공기 살포 방식, 지상살포 방식 등)와 상관없이 **주거 건물이나 주민들의 여가용 공간에 인접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작물의 해충에 대한 통합 방제의 일환**으로 자연적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물질과 제품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방제용 농약**과 2009년 10월 2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7/2009호에 따른 **기초물질 또는 저위험 물질만으로 구성된 농약은 주민 보호조치 없이 살포될 수 있다.**

❍ **주민 보호조치는** 농약 살포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지형, 토양, 기후 환경, 보건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농약을 살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거주자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보호 및 예방조치, 통보 방법, 시간대 제한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 이행 서약서를 **도(道) 단위에서 정한 양식 및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 주민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식품환경 위생안전청(ANSES)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 비산으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와 주민 건강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프랑스는 2025년 「무인 항공 방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및 보건상 명백한 이점이 있는 경우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하고 있다. 특히 **살포 가능한 농약의 종류를 한정하고, 농지 역시 경사도 20% 이상 등의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살포 가능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 및 의회 과학기술선택평가국(OPECST)와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증이 필수적**이며, **허용 여부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공동 명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프랑스는 인접 주거지나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조치 마련 시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만약 **이러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2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11호, 통권 제274호, 안성경】

□ 도입

❍ 최근 도시밀집화로 인한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도심 항공교통(UAM)이 주목**받고 있다. **도심 항공교통은** 무인항공기 기술을 사용하여 화물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이다.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에 앞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실증, 그리고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23년**에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기술의 발전과 실용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된 실증과 시범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빠른 운송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연방정부 주도로 도심 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시범 시설을 운용**하고, **패키지 개정법령인 2017년 「무인 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 시행령(DrohnenV)」과 2021년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 (LuftRÄndG)」을 통해 기존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집행 및 개선해 나감에 있어 참고 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도심항공교통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주제어	도심항공교통(UAM), 무인항공기,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vertiport), 첨단항공교통

□ 도입

❍ 202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Vertiport)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의 K-UAM 로드맵(2020년)에 따르면 2024년까지 시험·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일부 노선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지연으로 **2025년 6월 현재에도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비행체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버티포트, 통신망 등 안전 기준과 교통관리 체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시장이 연평균 30.7%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4,74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독일무인항공협회는 앞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됨에 따라 **2025년까지 상업용 드론 시장이 연평균 16.06%의 성장률로 성장**해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15억 5,4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독일은 도심항공교통이 친환경성, 교통대란 해결, 응급 환자 이송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연방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Unbemannte Luftfahrtsysteme und innovative Luftfahrtkonzept – 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과 **“3차원으로의 이륙-드론 및 항공택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동계획**(Abflug in die dritte Dimension – 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

für Drohnen und Flugtaxis)”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7년의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과 2021년의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 (LuftRÄndG)」를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림 독일의 미래 도심항공교통 예상도[10]



□ 독일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계획

1.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다. 2020년 5월 13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현 연방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서는 화물 및 여객 수송용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해당 실행계획에서 도심 항공교통을 위한 규정 마련, 기술 연구 지원, 인증 개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실행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EU의 무인항공 규정 (EU) 2019/947[13]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 무인항공기 보호를 위해 무인항공기 탐지 시스템을 독일 16개 공항에 구축한다.
- 에어택시나 화물 운송용 드론 연구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무인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 에어택시 인증 개발을 위해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협력한다.

2. 3차원으로의 이륙 - 드론 및 항공택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동계획

❍ 2020년 5월 13일 **항공교통부는 “3차원으로의 이륙 - 드론 및 항공택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계획의 목표는 드론과 항공택시를 정기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 행동계획은 **연구개발과 실용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동계획에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EU 규정의 이행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목표는 도심항공교통 구현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 ☑ 독일이 시장을 선도하고 수준 높은 안전기준을 확립한다.
- ☑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비행을 구현한다.
- ☑ 개인 정보 및 환경 보호를 추구한다.

3. 연방정부와 도시 간 양해각서(MOU) 체결

❍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6월 28일 EU가 지원**하는 도심항공교통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도시인 함부르크, 잉골슈타트, 아헨, 헤센주 북부와 도심항공교통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와 위의 4개 도시는 이번 **양해각서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충전 및 도심 통신 인프라 구축, 통합 공역을 위한 실증과 시범시설 구축, 드론과 에어택시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아이디어와 기술 공유, 도심항공교통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였다.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도심항공교통 기술, 규제 및 정치 분야의 모범 사례를 서로 교환한다.
- ☑ 주요 프로젝트 및 국제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한다.
- ☑ 디지털화, 자동화, 네트워킹, 스마트시티 관련 회의 및 워크샵을 공동 개최한다.
- ☑ 기술 전문성을 통한 지역 프로젝트에 상호 지원한다.

□ 독일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령

❍ 독일 연방헌법인 「기본법(GG)」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연방은 모형항공기와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칙**에 있어 **면허 취득과 권한 등 항공운송 영역에서의 독점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을 규제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1. 2017년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 시행령(DrohnenV)」

❍ 2017년 3월 30일에 제정된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을 통해 개정된 법령은 「항공교통면허시행령(LuftVZO)」, 「항공교통시행령(LuftVO)」,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이다.

개정법령	조문과 내용
「항공교통면허시행령 (LuftVZO)」	**제19조(식별표시)** 모형항공기 또는 무인항공기시스템에 자신의 이름 또는 주소를 부착해야 한다.
	제108조(행정위반) 규정대로 식별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
「항공교통시행령 (LuftVO)」	**제20조(허가가 필요한 공역의 사용)**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역 사용에 관하여 무인항공기 자가 구동 비행체(eines Flugkörpers mit Eigenantrieb)등의 항목을 추가한다.
	제21조(항공교통 관제 장치가 있는 비행장 상공 및 통제 공역의 사용)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델을 포함한다.
	제21a조(유럽연합 규정(EU) 2019/947에 따른 "개방형" 시설 범주의 절차 및 유관 당국) 무인항공기와 모형항공기의 운영에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 1.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이륙 질량이 5kg 이상인 모형항공기, 2.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델 로켓 추진 항공기, 추진제의 질량이 20g 이상인 경우, 3. 주거 지역에서 1.5km 미만의 거리에서 작동하는 내연 기관이 장착된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형항공기, 4. 비행장 경계에서 1.5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형항공기; 비행장에서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형항공기의 작동, 유럽연합 규정(EU) No 923/2012의 제2조에서 정의된 야간의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형항공기 등은 항공교통 관제 당국 및 비행 관제소의 승인도 필요로 한다.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 (LuftKostV)」	**부록** 도심항공교통 관련 항공청 행정수수료에 대해 인증서 발급비 등을 부과한다.(예를 들어, 인증발급비 25유로)

2. 2021년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AndG)」

❍ 2021년 6월 14일 제정된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를 통해 「항공교통법 (LuftVG)」, 「항공교통시행령(LuftVO)」, 「항공교통허가 시행령(LuftVZO)」, 「항공행정의 수수료(LuftKostV)」, 「연방항공청법(LFBAG)」 5개 법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법령	조문과 내용
「항공교통법 (LuftVG)」	**제1조(정의)** 제어스테이션을 포함한 항공기는 스포츠나 여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인항공기시스템'을 포함한다.
	제31조(연방의 업무와 주의 권한) 무인항공기 운항에 대한 감독과 면허발급 등은 주의 권한으로 한다.
	제32조(법령) 도심항공교통을 포함한 항공운송의 개념은 모든 비행 전반에 걸친 행위와 연구에 있어서 넓게 해석되고 있고, 명령 등 일반적인 규정에 모두 적용된다.(예를 들어, 「항공운송시행령」, 「항공운송허가시행령」 등을 말한다.)
	제58조(행정벌) 제2항 무인항공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U) 2019/947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제66a조(무인항공기 운영자등록) 무인항공기 운영자 등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제66b조(승인대상 무인항공기의 등록) 연방항공청(Luftfahrt-Bundesamt)은 승인에 따라 무인항공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연방항공청은 무인항공기 소유자에게 등록부에 저장된 무인항공기의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항공교통시행령 (LuftVO)」	**제21b조(규정(EU) 2019/947에 따른 운영 범주 "특별" 무인항공기 운행을 위한 관할 당국)** 언급된 보호구역, 지리적 목록에 있는 환경과 자연 지역을 고려한다. 향후에는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기반으로 한 모든 소음 관련 무인항공기에 대한 소음 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적절한 연구를 통해 무인항공기가 어떤 소음과 빛을 방출하는지,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조사해야 한다.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 (LuftKostV)」	**부록** 무인항공기 관련 항목을 각각의 부록에 모두 포함시켰다.(예를 들어, 「항공교통시행령(LuftVO)」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무인항공기 항목을 포함한다.)
「연방항공청법 (LFBAG)」	**제2조** 유럽연합의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무인항공기시스템의 제3국 운영자에 관한 위원회 위임 규정 (EU)2019/945 제19조의 의미 내에서 통보 기관으로서 연방항공청을 규정한다.

□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소위 항공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도심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비행체를 운항**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도심항공교통을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기존 법령안에 새로운 기술을 담아내기 위해 개정패키지법령**을 만들어 무인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일반법령을 일괄개정한 차이**가 있다.

❍ 구체적으로 **독일은 2017년 3월 30일에** 개정패키지법령인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을 제정**하였다. **「항공교통면허시행령(LuftVZO)」에서는 모형항공기와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일반항공기로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 교통시행령(LuftVO)」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공역, 관제장치가 있는 통제 공역의 사용 대상에 무인항공기를 포함**하였다.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에서는 도심 항공교통 관련 항공청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그리고 **독일은** 2021년 6월 14일에 개정패키지법령인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 (LuftRÄndG)」을 제정**하였다. 「항공교통법(LuftVG)」에서 무인항공기를 항공기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일반 항공기 규정이 무인항공기와 행정절차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 보호구역 또는 환경과 자연지역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운행에 대해 규제하였으며,「항공교통허가시행령(LuftVZO)」에서 항공기 인증 대상 범주에 25㎏이상인 무인항공기를 포함하였다.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에서 증명서 수수료 발급에 무인항공기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연방항공청법(LFBAG)」에서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른 통보기관으로 연방항공청을 지정하였다.

❍ 미래의 새 교통수단으로서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집행 및 개선해 나감에 있어, 정부승인 간소화, 기업친화적 수단 마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실험과 기술개발 노력 등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자료

- 최경원, 데이터로 보는 도심항공교통(UAM), 국회도서관,『Data&Law』2025-5호(통권 30호)
- EASA, Study on the societal acceptance of Urban Air Mobility in Europe, 2021
- Vishnu Kumar Kaliappan, Urban Air Mobility: Intelligent, Safe and Sustainable Systems for Future Transportation, River Publishers, 2024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첫째주	행정안전	○광역경제생활권 과학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거점 국립과학관 조성하자!** ○전남 산불 위험지역 분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문화체육관광	○콘텐츠 산업 현황과 분야별 쟁점 ○글로벌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공동제작
	국토교통	○유지관리 중심 건축정책 전환을 위한 건축물 재고지수 개발 ○LHRI focus. vol.57 특집호 (2025. 6. 23),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전전화 주택의 보급확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물류네트워크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전략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 원자력을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추진 전략 ○대미 무역 협상의 경제안보 의제 논의 전망
	외교통일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G7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평가 및 함의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노동당 인사개편 평가 ○미·중 경제전쟁 관련 동남아 국가의 대응과 시사점 ○(2025년) 중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 내용 : 전략적 협력 심화와 新 국제 질서 구축 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환경노동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첫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경기도 우주항공산업의 본 궤도 진입을 위한 전략 ○투자 규모를 중심으로 본 주요국 AI 정책 동향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전략 ○뉴스 프로그램 시청행태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보건복지	○재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의 사례와 전남의 대응 방향
	국방	○트럼프 2기 북핵문제와 한국의 핵옵션. 1, 트럼프 동맹 정책과 확장억제의 미래
	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연구
	환경노동, 행정안전	○탄소배출량 저감 위한 서울시 도로시설물 분야 전략방안
	여성가족	○가족 의존적 돌봄과 부양 현실을 보여주는 조손가족의 특성과 정책 지원 방안
7월 둘째주	행정안전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연구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행정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수입시장 수출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및 관세정책 현황 ○주요국 對베트남 진출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생성형 AI 시대, 지재권의 역외적용과 테이터주권주의 ○지정학적 위험과 전력 가격 : 주요국 무탄소에너지 비중의 역할 분석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공시제도 개선방안
	외교통일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 확대와 시사점 ○최근 러시아의 동남아 진출 확대에 대한 역내 인식 및 대응
	교육	○지방대학의 현황과 과제 :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토교통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 연구
	환경노동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제도 마련 연구 **○<u>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u>**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뉴욕주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적 혁신과 한국형 기후복지모델에 주는 함의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둘째주	정무	○국내 은행산업의 과점과 공공성 이슈에 대한 소고
	국방	○트럼프 정부의 핵 현대화 정책 전망과 한반도 시사점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경쟁력 진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보건복지	○고령화 시대, 의료용 외골격 현황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로봇산업 정책동향: 2025-06, 일본의 피지컬 AI 연구개발 전략 ○AI, 미래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	○'Made by AI 음악'과 공존하기 : 생성형 AI시대, 음악산업의 전환과 정책 방향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V.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영광군, 의견25-0204, 2025. 6. 27.)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u>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u>

□ 이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에서** <u>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u>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하 "영광군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제3조), 해당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영광군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군민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광군조례안에서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제4조),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고충민원을 처리**해야 하고(제18조제1항),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제22조),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고(제25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영광군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보이지 않고,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속하는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며**, 이러한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에는 그 조직편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이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2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단양군, 의견25-0194. 2025. 6. 27.〕

□ 질의요지

가.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농업보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u>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u>.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u>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u>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이하 “단양군조례”라 한다)에 따른 농업보조금(이하 “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기준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제1호)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4. 12. 19. 행정안전부예규 제3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제1호), **중복 수급 해당 여부**(제2호)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제3호)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사유의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보조금 교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나 기준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보조금 교부 결정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업보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 사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요지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는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또는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폭넓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조례에 규정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 4. (생 략)

② (생 략)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축산법」 제22조 관련) 【법제처 25-00393, 2025. 7. 7., 영암군】

□ 질의요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축산법」(이하 "개정 「축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축사육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함)**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회답**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유**

축산업의 허가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축산법」(이하 "구 「축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축사육업 등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축산법 시행령」**(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28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축산업의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으로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에서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같은 목 2)에서는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규정**하고,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축산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축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축산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축산업의 허가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허가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인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정 「축산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적용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제22조에서 새로 규정한 축산업 허가요건은 같은 법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후에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개정 「축산법」 부칙 제2조에서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 부터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될 축산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처음" 또는 "신규"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축산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함)**를 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허가신청서에서도 각각의 신청이 허가인지 변경허가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개정 「축산법」 제53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축산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의 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축산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데,

개정 「축산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축산법」 시행 전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구 축산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축산법(2018. 12. 31.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축사·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 ⑧ (생 략)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5-0381, 2025. 7. 7., 국토교통부】

□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라 함) 중 **1인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1인에게 자신의 민간임대주택 지분 전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포함**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포함됩니다.**

□ **이유**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각 1인은 각각 임대 사업자의 결격사유**(법 제5조의6) 등 **민간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 특례 등 관계 법령의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도 **일반 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간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일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제1항), **임대의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함)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기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고 있는데(제2항), 그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방지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 **주택 양도의 상대방을 "다른 임대사업자"로 제한한 것은** 임대사업의 지속, 즉 해당 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1인에게 그 민간임대주택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중 일부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할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다른 1인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허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양도**를 ①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②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 동안 신고·허가 등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행위**에 대해서는 ①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7조제4항제2호의2)를, ② 같은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67조제1항제2호), **만약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임대의무기간 중 **공동명의 임대사업자가 양도절차를 위반하여 다른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1인에게 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무단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중 1인이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3. (생 략)

③ ~ ⑨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전국특별자치도의회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